

# 유치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b>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b></p>  | <p><b>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b></p>   |
| <p><b>제10조(수업일수 등)</b>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6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한다.</p>  | <p><b>제10조(수업일수 등)</b>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b>30</b>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한다.</p>  |
| <p><b>제6장 입학·편입학·휴학·재입학·전학·퇴학·수료·졸업</b></p> <p><b>제15조(재입학)</b> 본원의 수료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br/>(신설)</p>   | <p><b>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b></p> <p><b>제15조(재입학)</b> 본원의 수료 또는 퇴학한 자가 <b>재입학하고자 할</b> 때에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p>   |
| <p><b>제16조(전출/전입학)</b> 유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입 및 전출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전입, 전출을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p>   | <p><b>제16조(편입학)</b> 유치원에서 <b>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b></p> <p><b>제17조(전출/전입학)</b> 유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입 및 전출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전입, 전출을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p>  |
| <p><b>제17조(휴학)</b>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1회 이상 거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p>  | <p><b>제18조(휴학/복학)</b>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1회 이상 거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p>  |
| <p><b>제19조(퇴학)</b>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청할 때</li> <li>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li> </ol> <p>* 보호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퇴서를 제출한다.</p> | <p><b>제19조(퇴학)</b>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청할 때</li> <li>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li> </ol>  |
| <p><b>제19조(수료)</b> 원장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3, 4세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장을 수여한다. 수료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p>              | <p><b>〈삭제〉</b></p> <p><b>제20조(수료/졸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장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li> <li>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치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li> <li>③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li> <li>④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3, 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li> </ol> |
| <p><b>제20조(졸업)</b> 원장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5세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졸업을 처리한다.</p>                 |  |